|  |  |  |
| --- | --- | --- |
| **사회구조 잠행방법**  국무원령 제649호, 2014년 2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며 공평사회를 촉진시키고 사회의 조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시목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구조 제도는 최저생활보장, 급난구조, 지속가능성을 취지로 하고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연결시켜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맞물리는 사회구조를 제공한다.  사회구조 사업은 공개, 공평, 공정, 신속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전국 사회구조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무원 민정부서에서 총괄한다. 국무원 산하의 민정, 위생·계획출산, 교육, 주택 및 도시건설,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구조 관리업무를 수행핸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 민정, 위생·계획출산, 교육, 주택 및 도시건설,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사회구조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본 조 제1항, 제2항에 나열된 행정부서를 사회구조관리부서로 통칭한다.  **제4조** 사회구조 신청 접수 및 조사·확인 업무는 향(鄕)·진(鎭) 인민정부에서 담당하고 구체 업무처리는 사회구조업무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실무자가 담당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사회구조 업무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구조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정부에서 지도, 민정부서에서 리드, 관련 부서간 협력, 사회역량이 참여하는 사회구조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완비하며 사회구조자금·물자 보장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정부에서 배치하는 사회구조자금 및 사회구조 업무경비를 재정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사회구조자금은 특별 관리, 독립 채산 및 특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구조자금을 유용, 횡령해서는 아니된다. 사회구조자금의 지급은 재정국고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의 통일계획에 따라 사회구조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구조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제7조** 국가는 사회역량의 사회구조 사업 참여를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8조** 사회구조 업무 실적이 뛰어난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최저생활보장**  **제9조** 같이 생활하는 가구 구성원의 인당 평균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 미달이고 현지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재산상황 규정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을 지급한다.  **제10조** 최저생활보장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현지 거주민 필수 생활비용에 따라 확정, 공표하며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상황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적시에 조정한다.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소득·재산상황에 대한 인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11조**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같이 생활하는 가구 구성원이 호적 소재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서면신청을 제출한다. 가구 구성원이 직접 신청을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2) 향(鄕)·진(鎭) 인민정부와 동사무소는 가정방문, 이웃방문, 서면 증명자료 확보, 대중 심사·토의, 정보 확인조사 등 방식을 통하여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고 초보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인 소재 촌, 지역사회에서의 공시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3) 현급 인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 소재 촌, 지역사회에 비준결정을 공표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고 서면으로 기각 이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한다.  **제12조** 최저생활보장 비준을 득한 가구에 대해서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구 구성원의 인당 평균소득과 현지 최저생활보장 기준의 차액에 해당되는 최저생활보장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최저생활보장을 지급받지만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노인, 미성년자, 중도장애인 및 중병환자에 대해서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는 인구, 소득,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때에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 및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인구, 소득, 재산 상황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인구, 소득,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적시에 최저생활보장금의 증감 또는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최저생활보장금 지급 중단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장 극빈자 부양**  **제14조** 노동능력 또는 소득원천이 없고 법정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법정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및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극빈자 부양을 지원한다.  **제15조** 극빈자 부양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생활조건을 지급한다.  (2) 자립생활이 어려운 자를 보살핀다.  (3) 질병 치료를 제공한다.  (4) 상장례를 지원한다.  극빈자 부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확정 및 공표한다.  극빈자 부양은 도시·농촌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 기본생활보장 등 제도와 연결시켜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극빈자 부양 신청은 본인이 직접 호적 소재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위탁하여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극빈자 부양에 대한 심사비준 절차는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향(鄕)·진(鎭) 인민정부와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생활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극빈자 부양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를 발견한 경우 주동적으로 극빈자 부양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극빈자가 더 이상 부양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할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부양서비스기구는 이를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고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부양 중단 결정을 공시한다.  **제19조** 부양 대상 극빈자는 현지 부양서비스기구에서 집중적으로 부양할 수도 있고 가택에서 분산적으로 부양할 수도 있다. 부양 대상에 해당되는 극빈자는 스스로 부양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4장 재해 피해자 구조**  **제20조** 국가는 자연재해 구조제도를 구축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기본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생활구조를 제공한다.  자연재해 구조 업무에 대해 속지주의 관리를 시행하고 등급별로 책임진다.  **제21조**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자연재해 다발지역 및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급 인민정부는 자연재해의 특성, 거주민 수 및 인구 분포 등 상황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구조물자 비축창고를 설치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의 구조물자 긴급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자연재해 발생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 산하의 자연재해 구조 긴급조율기구는 상황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을 긴급대피 및 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식품, 식수, 의복, 이불, 난방용품, 임시 거주지, 의료·방역 등 긴급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재해 상황이 안정화 된 후 피해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피해손실을 평가,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24조** 피해지역 인민정부는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주택이 심각하게 손상된 피해자들을 위한 과도기적인 안치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자연재해의 위험이 제거된 후 피해지역 인민정부 산하의 민정부서 등 관련 부서는 적시에 본 행정구역내의 주택 회복·재건 보조 대상을 파악하여 자금, 물자 등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자연재해 발생 후 피해지역 인민정부는 당해 연도 동한(冬寒) 또는 차기 연도 춘궁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본생활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의료구조**  **제27조** 국가는 의료구조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의료구조 대상이 기본 의료위생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의료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구성원.  (2) 부양 대상에 해당되는 극빈자.  (3)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특수 빈곤자.  **제29조** 의료구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또는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개입납부분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구조 대상에게 지급한다.  (2)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 보험처리 후 규정에 부합하는 개인부담분 기본의료비에 대해 구조 대상과 그 가구가 부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료구조의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의료구조 자금의 상황에 따라 확정 및 공표한다.  **제30조** 의료구조 신청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여 심사, 공시 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심사비준한다.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구성원과 극빈 부양 대상자에 대한 의료구조 업무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제3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의료구조와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을 연결시킨 의료비 결산제도를 구축 및 완비함으로써 의료구조 대상을 위해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국가는 질병 긴급구조 제도를 구축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원불명자 또는 응급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긴급·중병환자에게 구조를 제공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긴급치료비용은 질병긴급구조기금으로 지급한다.  질병 긴급구조 제도는 기타 의료 보장 제도와 연결시켜 시행해야 한다.  **제6장 교육구조**  **제33조** 국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구성원, 극빈 부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구조를 제공한다.  고중교육(중등 직업교육 포함), 일반 고등교육 단계에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구성원, 극빈 부양 대상자,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어린이를 상대로 실제 사정에 근거하여 적당한 교유구조를 제공한다.  **제34조** 교육구조는 교육 단계별 수요에 근거하여 비용 감면, 조학금 지급, 생활보조금 지급, 알바자리 제공 등 방식으로 실시하며 교육구조 대상자의 학습·생활 기본 수요를 보장한다.  **제35조** 교육구조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수준 및 교육구조 대상자의 학습·생활 기본 수요에 근거하여 확정 및 공표한다.  **제36조** 교육구조 신청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하고 규정된 심사·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교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7장 주택구조**  **제37조** 국가는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분산적으로 부양하는 극빈자에게 주택구조를 제공한다.  **제38조** 주택구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임대 보조금 지급, 농촌 위험주택 개조 등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39조** 주거난의 기준과 구조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수준, 주택 가격 등 요소에 근거하여 확정 및 공표한다.  **제40조** 도시가구의 주택구조 신청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를 통해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에 제출하거나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에 직접 제출하고 소득·재산상황에 대한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심사 절차, 주거상황에 대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의 심사 절차 및 공시 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서에서 신청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장을 제공한다.  농촌가구의 주택구조 신청절차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각 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재정 투입, 부지 공급 등 조치를 취하여 주택구조 실시를 보장한다.  **제8장 취업구조**  **제42조** 국가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능력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일자리 보조금 지원, 교육 보조금 지원, 비용 감면, 공익성 일자리 배치 등 방식의 취업구조를 제공한다.  **제43조**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노동능력자가 모두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이들 중 최소한 한명이 취직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취업구조 신청은 주소지 동, 지역사회의 공공취업서비스기구에 제출하고 공공취업서비스기구는 확인절차 및 등기절차를 행한 후 취업정보 제공, 직장 소개, 취업 지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45조**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미취업 노동능력자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등 관련 부서로부터 소개 받은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능력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등 관련 부서로부터 소개 받은 본인의 건강상황, 노동능력과 맞물리는 일자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세번 거절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당해 노동능력자의 최저생활보장금 감액 지급 또는 지급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제46조** 취업구조 대상자를 채용한 고용주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세금혜택, 소액담보대출 등 취업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9장 임시구조**  **제47조** 화재, 교통사고 등 돌발사건 또는 가구 구성원의 급성 질환 돌발 등의 사유로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임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또는 필수적 생활지출이 가구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임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기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임시구조를 제공한다.  **제48조** 임시구조 신청은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 및 공시 절차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에서 심사비준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구조금 액수가 적은 임시구조 신청에 대한 심시비준 권한을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가 심사비준토록 할 수 있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 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 임시구조의 세부사항,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확정 및 공표한다.  **제50조** 국가는 정처 없는 노숙자, 구걸자를 대상으로 임시적 숙식, 급성 질환 치료, 귀가 지원 등 구조를 제공한다.  **제51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노숙자, 구걸자를 발견했을 경우 노숙자, 구걸자에게 구조관리기구에 도움을 청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및 행동이 불편한 기타 노숙자, 구걸자의 경우 구조관리기구로 안내 또는 호송해야 한다. 급성 질환 발병자의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 긴급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장 사회역량의 참여**  **제52조** 국가는 개인과 조직 등 사회역량이 기부, 취약층 돕기 프로그램 개발, 봉사기구 창립, 자원봉사 참여 등 방식으로 사회구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53조** 사회구조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역량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보조금 지원, 세금혜택, 비용 감면 등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5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구조 사업의 구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 하도급, 구매 등 방식을 통하여 사회역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업무 서비스기구 및 사회업무 종사자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 사회구조 대상자를 위하여 사회적응 교육, 능력제고 교육, 심리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6조** 사회구조관리부서 및 관련 기구는 사회역량이 사회구조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통로를 구축하고 사회구조 프로젝트, 사회구조 수요 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역량이 사회구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장 감독관리**  **제5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산하 사회구조관리부서는 사회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58조**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는 규정에 따라 소득·재산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의 요구와 위탁을 근거로 호적관리, 세무, 사회보험, 부동산 등기, 공상등기, 주택공적금 관리, 차량·선박 관리 등 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기구를 통하여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의 소득·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확인을 대행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금융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의 경제상황 관련 정보 조사확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구조 대상자 심사 및 인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제5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구조관리부서 및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사항 관련 자료를 조회, 기록, 복사할 수 있고 관련 조직, 개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관련 상황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조직과 개인은 사실대로 설명자료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사회구조 신청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사회구조관리부서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사회구조업무 수행기관 또는 현급 인민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신청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회구조업무 수행기관 및 현급 인민정부는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기타 사회구조관리부서로 전달하여 처리토록 해야 한다.  향(鄕)·진(鎭) 인민정부, 동사무소는 사회구조 신청 통일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신청인의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해당 부서로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제61조**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실무자는 사회구조 업무 수행과정에 획득한 공민의 개인정보 중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기타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제6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산하 사회구조관리부서는 신문지, 라디오방송, TV방송,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구조 관련 법률, 법규와 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그 산하 사회구조관리부서는 공공조회실, 자료청구실, 정보게시판 등 대중이 익숙한 경로를 통해 사회구조자금·물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사회구조 직책 수행 실무자는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여하한 조직과 개인은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사회구조 업무 수행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고발,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속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6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서,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구조자금·물자의 조달, 배분, 관리 및 사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제65조** 사회구조를 신청하였거나 제공받고 있는 가구 또는 개인이 사회구조관리부서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장 법률책임**  **제6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신청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조 신청 접수를 거절한 경우.  (2) 구조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조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한 경우.  (3)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 신청을 비준한 경우.  (4)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사회구조 자금·물자 수령기록 및 서비스 이용기록을 분실 또는 분식한 경우.  (6)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회구조자금, 물자를 발급하거나 또는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 사회구조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도모 등 행위를 행한 경우.  **제67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사회구조 자금·물자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회수명령과 더불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 허위보고, 은폐, 위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구조금·물자·서비스를 사취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사회구조 중단을 결정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사회구조금·물자 반납을 명령하며 불법으로 취득한 보조금 또는 물자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제69조** 이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3장 부칙**  **제70조** 이 방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社会救助暂行办法**  国务院令第649号，2014年2月21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社会救助，保障公民的基本生活，促进社会公平，维护社会和谐稳定，根据宪法，制定本办法。  **第二条** 社会救助制度坚持托底线、救急难、可持续，与其他社会保障制度相衔接，社会救助水平与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  社会救助工作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及时的原则。  **第三条** 国务院民政部门统筹全国社会救助体系建设。国务院民政、卫生计生、教育、住房城乡建设、人力资源社会保障等部门，按照各自职责负责相应的社会救助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民政、卫生计生、教育、住房城乡建设、人力资源社会保障等部门，按照各自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相应的社会救助管理工作。  前两款所列行政部门统称社会救助管理部门。  **第四条**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负责有关社会救助的申请受理、调查审核，具体工作由社会救助经办机构或者经办人员承担。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协助做好有关社会救助工作。  **第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社会救助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建立健全政府领导、民政部门牵头、有关部门配合、社会力量参与的社会救助工作协调机制，完善社会救助资金、物资保障机制，将政府安排的社会救助资金和社会救助工作经费纳入财政预算。  社会救助资金实行专项管理，分账核算，专款专用，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挤占挪用。社会救助资金的支付，按照财政国库管理的有关规定执行。  **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统一规划建立社会救助管理信息系统，实现社会救助信息互联互通、资源共享。  **第七条** 国家鼓励、支持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  **第八条** 对在社会救助工作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二章 最低生活保障**  **第九条** 国家对共同生活的家庭成员人均收入低于当地最低生活保障标准，且符合当地最低生活保障家庭财产状况规定的家庭，给予最低生活保障。  **第十条** 最低生活保障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按照当地居民生活必需的费用确定、公布，并根据当地经济社会发展水平和物价变动情况适时调整。  最低生活保障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的认定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  **第十一条** 申请最低生活保障，按照下列程序办理：  （一）由共同生活的家庭成员向户籍所在地的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书面申请；家庭成员申请有困难的，可以委托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代为提出申请。  （二）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通过入户调查、邻里访问、信函索证、群众评议、信息核查等方式，对申请人的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进行调查核实，提出初审意见，在申请人所在村、社区公示后报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批。  （三）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经审查，对符合条件的申请予以批准，并在申请人所在村、社区公布；对不符合条件的申请不予批准，并书面向申请人说明理由。  **第十二条** 对批准获得最低生活保障的家庭，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按照共同生活的家庭成员人均收入低于当地最低生活保障标准的差额，按月发给最低生活保障金。  对获得最低生活保障后生活仍有困难的老年人、未成年人、重度残疾人和重病患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必要措施给予生活保障。  **第十三条**  最低生活保障家庭的人口状况、收入状况、财产状况发生变化的，应当及时告知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  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以及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对获得最低生活保障家庭的人口状况、收入状况、财产状况定期核查。  最低生活保障家庭的人口状况、收入状况、财产状况发生变化的，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及时决定增发、减发或者停发最低生活保障金；决定停发最低生活保障金的，应当书面说明理由。  **第三章 特困人员供养**  **第十四条** 国家对无劳动能力、无生活来源且无法定赡养、抚养、扶养义务人，或者其法定赡养、抚养、扶养义务人无赡养、抚养、扶养能力的老年人、残疾人以及未满16周岁的未成年人，给予特困人员供养。  **第十五条** 特困人员供养的内容包括：  （一）提供基本生活条件；  （二）对生活不能自理的给予照料；  （三）提供疾病治疗；  （四）办理丧葬事宜。  特困人员供养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确定、公布。  特困人员供养应当与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障、最低生活保障、孤儿基本生活保障等制度相衔接。  **第十六条** 申请特困人员供养，由本人向户籍所在地的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书面申请；本人申请有困难的，可以委托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代为提出申请。  特困人员供养的审批程序适用本办法第十一条规定。  **第十七条**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及时了解掌握居民的生活情况，发现符合特困供养条件的人员，应当主动为其依法办理供养。  **第十八条** 特困供养人员不再符合供养条件的，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或者供养服务机构应当告知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由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审核并报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核准后，终止供养并予以公示。  **第十九条** 特困供养人员可以在当地的供养服务机构集中供养，也可以在家分散供养。特困供养人员可以自行选择供养形式。  **第四章 受灾人员救助**  **第二十条** 国家建立健全自然灾害救助制度，对基本生活受到自然灾害严重影响的人员，提供生活救助。  自然灾害救助实行属地管理，分级负责。  **第二十一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和自然灾害多发、易发地区的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自然灾害特点、居民人口数量和分布等情况，设立自然灾害救助物资储备库，保障自然灾害发生后救助物资的紧急供应。  **第二十二条** 自然灾害发生后，县级以上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的自然灾害救助应急综合协调机构应当根据情况紧急疏散、转移、安置受灾人员，及时为受灾人员提供必要的食品、饮用水、衣被、取暖、临时住所、医疗防疫等应急救助。  **第二十三条** 灾情稳定后，受灾地区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评估、核定并发布自然灾害损失情况。  **第二十四条** 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在确保安全的前提下，对住房损毁严重的受灾人员进行过渡性安置。  **第二十五条** 自然灾害危险消除后，受灾地区人民政府民政等部门应当及时核实本行政区域内居民住房恢复重建补助对象，并给予资金、物资等救助。  **第二十六条** 自然灾害发生后，受灾地区人民政府应当为因当年冬寒或者次年春荒遇到生活困难的受灾人员提供基本生活救助。  **第五章 医疗救助**  **第二十七条** 国家建立健全医疗救助制度，保障医疗救助对象获得基本医疗卫生服务。  **第二十八条** 下列人员可以申请相关医疗救助：  （一）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  （二）特困供养人员；  （三）县级以上人民政府规定的其他特殊困难人员。  **第二十九条** 医疗救助采取下列方式：  （一）对救助对象参加城镇居民基本医疗保险或者新型农村合作医疗的个人缴费部分，给予补贴；  （二）对救助对象经基本医疗保险、大病保险和其他补充医疗保险支付后，个人及其家庭难以承担的符合规定的基本医疗自负费用，给予补助。  医疗救助标准，由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经济社会发展水平和医疗救助资金情况确定、公布。  **第三十条** 申请医疗救助的，应当向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经审核、公示后，由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批。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和特困供养人员的医疗救助，由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直接办理。  **第三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医疗救助与基本医疗保险、大病保险相衔接的医疗费用结算机制，为医疗救助对象提供便捷服务。  **第三十二条** 国家建立疾病应急救助制度，对需要急救但身份不明或者无力支付急救费用的急重危伤病患者给予救助。符合规定的急救费用由疾病应急救助基金支付。  疾病应急救助制度应当与其他医疗保障制度相衔接。  **第六章 教育救助**  **第三十三条** 国家对在义务教育阶段就学的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特困供养人员，给予教育救助。  对在高中教育（含中等职业教育）、普通高等教育阶段就学的最低生活保障家庭成员、特困供养人员，以及不能入学接受义务教育的残疾儿童，根据实际情况给予适当教育救助。  **第三十四条** 教育救助根据不同教育阶段需求，采取减免相关费用、发放助学金、给予生活补助、安排勤工助学等方式实施，保障教育救助对象基本学习、生活需求。  **第三十五条** 教育救助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经济社会发展水平和教育救助对象的基本学习、生活需求确定、公布。  **第三十六条** 申请教育救助，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就读学校提出，按规定程序审核、确认后，由学校按照国家有关规定实施。  **第七章 住房救助**  **第三十七条** 国家对符合规定标准的住房困难的最低生活保障家庭、分散供养的特困人员，给予住房救助。  **第三十八条** 住房救助通过配租公共租赁住房、发放住房租赁补贴、农村危房改造等方式实施。  **第三十九条** 住房困难标准和救助标准，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经济社会发展水平、住房价格水平等因素确定、公布。  **第四十条** 城镇家庭申请住房救助的，应当经由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或者直接向县级人民政府住房保障部门提出，经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核家庭收入、财产状况和县级人民政府住房保障部门审核家庭住房状况并公示后，对符合申请条件的申请人，由县级人民政府住房保障部门优先给予保障。  农村家庭申请住房救助的，按照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规定执行。  **第四十一条** 各级人民政府按照国家规定通过财政投入、用地供应等措施为实施住房救助提供保障。  **第八章 就业救助**  **第四十二条** 国家对最低生活保障家庭中有劳动能力并处于失业状态的成员，通过贷款贴息、社会保险补贴、岗位补贴、培训补贴、费用减免、公益性岗位安置等办法，给予就业救助。  **第四十三条** 最低生活保障家庭有劳动能力的成员均处于失业状态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针对性的措施，确保该家庭至少有一人就业。  **第四十四条** 申请就业救助的，应当向住所地街道、社区公共就业服务机构提出，公共就业服务机构核实后予以登记，并免费提供就业岗位信息、职业介绍、职业指导等就业服务。  **第四十五条** 最低生活保障家庭中有劳动能力但未就业的成员，应当接受人力资源社会保障等有关部门介绍的工作；无正当理由，连续3次拒绝接受介绍的与其健康状况、劳动能力等相适应的工作的，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决定减发或者停发其本人的最低生活保障金。  **第四十六条**  吸纳就业救助对象的用人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社会保险补贴、税收优惠、小额担保贷款等就业扶持政策。  **第九章 临时救助**  **第四十七条** 国家对因火灾、交通事故等意外事件，家庭成员突发重大疾病等原因，导致基本生活暂时出现严重困难的家庭，或者因生活必需支出突然增加超出家庭承受能力，导致基本生活暂时出现严重困难的最低生活保障家庭，以及遭遇其他特殊困难的家庭，给予临时救助。  **第四十八条** 申请临时救助的，应当向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经审核、公示后，由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批；救助金额较小的，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可以委托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审批。情况紧急的，可以按照规定简化审批手续。  **第四十九条** 临时救助的具体事项、标准，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公布。  **第五十条** 国家对生活无着的流浪、乞讨人员提供临时食宿、急病救治、协助返回等救助。  **第五十一条** 公安机关和其他有关行政机关的工作人员在执行公务时发现流浪、乞讨人员的，应当告知其向救助管理机构求助。对其中的残疾人、未成年人、老年人和行动不便的其他人员，应当引导、护送到救助管理机构；对突发急病人员，应当立即通知急救机构进行救治。  **第十章 社会力量参与**  **第五十二条** 国家鼓励单位和个人等社会力量通过捐赠、设立帮扶项目、创办服务机构、提供志愿服务等方式，参与社会救助。  **第五十三条** 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财政补贴、税收优惠、费用减免等政策。  **第五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将社会救助中的具体服务事项通过委托、承包、采购等方式，向社会力量购买服务。  **第五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发挥社会工作服务机构和社会工作者作用，为社会救助对象提供社会融入、能力提升、心理疏导等专业服务。  **第五十六条** 社会救助管理部门及相关机构应当建立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的机制和渠道，提供社会救助项目、需求信息，为社会力量参与社会救助创造条件、提供便利。  **第十一章 监督管理**  **第五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社会救助管理部门应当加强对社会救助工作的监督检查，完善相关监督管理制度。  **第五十八条** 申请或者已获得社会救助的家庭，应当按照规定如实申报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根据申请或者已获得社会救助家庭的请求、委托，可以通过户籍管理、税务、社会保险、不动产登记、工商登记、住房公积金管理、车船管理等单位和银行、保险、证券等金融机构，代为查询、核对其家庭收入状况、财产状况；有关单位和金融机构应当予以配合。  县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建立申请和已获得社会救助家庭经济状况信息核对平台，为审核认定社会救助对象提供依据。  **第五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社会救助管理部门和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在履行社会救助职责过程中，可以查阅、记录、复制与社会救助事项有关的资料，询问与社会救助事项有关的单位、个人，要求其对相关情况作出说明，提供相关证明材料。有关单位、个人应当如实提供。  **第六十条** 申请社会救助，应当按照本办法的规定提出；申请人难以确定社会救助管理部门的，可以先向社会救助经办机构或者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求助。社会救助经办机构或者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接到求助后，应当及时办理或者转交其他社会救助管理部门办理。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建立统一受理社会救助申请的窗口，及时受理、转办申请事项。  **第六十一条** 履行社会救助职责的工作人员对在社会救助工作中知悉的公民个人信息，除按照规定应当公示的信息外，应当予以保密。  **第六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社会救助管理部门应当通过报刊、广播、电视、互联网等媒体，宣传社会救助法律、法规和政策。  县级人民政府及其社会救助管理部门应当通过公共查阅室、资料索取点、信息公告栏等便于公众知晓的途径，及时公开社会救助资金、物资的管理和使用等情况，接受社会监督。  **第六十三条** 履行社会救助职责的工作人员行使职权，应当接受社会监督。  任何单位、个人有权对履行社会救助职责的工作人员在社会救助工作中的违法行为进行举报、投诉。受理举报、投诉的机关应当及时核实、处理。  **第六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审计机关依法对社会救助资金、物资的筹集、分配、管理和使用实施监督。  **第六十五条** 申请或者已获得社会救助的家庭或者人员，对社会救助管理部门作出的具体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十二章 法律责任**  **第六十六条** 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对符合申请条件的救助申请不予受理的；  （二）对符合救助条件的救助申请不予批准的；  （三）对不符合救助条件的救助申请予以批准的；  （四）泄露在工作中知悉的公民个人信息，造成后果的；  （五）丢失、篡改接受社会救助款物、服务记录等数据的；  （六）不按照规定发放社会救助资金、物资或者提供相关服务的；  （七）在履行社会救助职责过程中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  **第六十七条** 违反本办法规定，截留、挤占、挪用、私分社会救助资金、物资的，由有关部门责令追回；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六十八条** 采取虚报、隐瞒、伪造等手段，骗取社会救助资金、物资或者服务的，由有关部门决定停止社会救助，责令退回非法获取的救助资金、物资，可以处非法获取的救助款额或者物资价值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第六十九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三章 附　则**  **第七十条** 本办法自2014年5月1日起施行。 |